

---

#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

2022. 10.

# 목 차

## I. 서론

## II. 보고서 작성방법 및 준비 과정

## III.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 결과

### 1. 이행한 권고

-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 b. 국내 제도의 변화
- c. 시민적·정치적 권리
-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e. 여성
- f. 아동
- g. 장애인
- h. 이주민과 난민

### 2. 이행 중인 권고

-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 b. 국내 제도의 변화
- c. 시민적·정치적 권리
-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e. 여성
- f. 장애인
- g. 이주민과 난민

### 3. 이행하지 않은 권고

-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 b. 국내 제도의 변화

## IV. 자발적 공약의 이행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노력

## I. 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이하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16/21에 따라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1월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후 권고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모든 적절한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동 보고서 제출 이전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2022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 II. 보고서 작성방법 및 준비 과정

대한민국 법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17/119에 기반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작성 지침에서 권장 바와 같이 권고의 이행현황을 작성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참고하였고, 관련 목표를 지난 심의 권고와 함께 기재하여 그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인권 보호와 SDG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2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여 일부는 국가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III.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 결과

### 1. 이행한 권고

####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대한민국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대한민국은 모든 주제별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보고관<sup>1)</sup>의 국가방문 동안 건설적인 상호대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

1) 2018년 5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2019년 7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2017년 12월, 2018 7월, 2019년 1월과 6월,

는 OHCHR 서울사무소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권고 130.7~130.9)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호 유보 철회**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한 「상법」 제732조와의 상충을 우려하여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제e호의 적용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동 조항을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21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제e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권고 132.12.)

### **기업과 인권**

정부는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면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담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국가가 이를 장려할 의무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2021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권고 130.26., SDG12.6)

### **국제개발협력**

정부는 우리 개발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인권기반 접근법에 기초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인권분야 중기전략(2021~2025년),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년)에 따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 중이다. 또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무상협력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인권을 내재화하였다. 나아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KOICA 제2기 인권경영 이행계획(2021~2023년) 등에 기초해 사업수행기관에 의한 현지주민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고 132.69.)

## **b. 국내 제도의 변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는 인권보장의 제도적 실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

2022년 2월 및 6월, 8~9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22년 6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시행하였다(2018~2022년). 그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였고 관계 부처와 수시로 협력하였다. 정부는 현재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권고 130.12.~130.14.)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회 각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권위원 임기만료와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고, 금고 이상 형 선고 외에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인권위는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선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 130.10.~130.11., SDG16.a)

## 군인권 증진

2014년 선임병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故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군 내 자살예방을 위하여 식별·관리·분리의 단계별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복무 중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군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군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 국방부와 각 군에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증원하였다. 또 가·피해자 분리규정을 신설하고 사건처리절차를 정립하고 2차 피해 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2022년부터 매년 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명성 보장과 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 기반 앱을 개발하고 있다. 또 근본적인 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급별 직무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다.

## 인권교육

교육부는 2018년 교육과정 학습주제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인권교육 관련 학습자료 개발,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

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학교 자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부터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업하여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추진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2017~2018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17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공동선언을 하였고, 2020년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인권교육, 언론인 인권교육 등 공공기관, 사회 등 각 분야별 교육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인권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고 130.65., SDG4.7)

### c. 시민적·정치적 권리

#### 인신매매 근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정의하고 있으며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식별·보호·지원의 강화,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여 정부는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개발 및 활용, 인신매매 사례 판정,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생계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권고 130.44.~130.47., 132.112., SDG8.7, 16.2, 16.3)

#### 가정폭력 방지

정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등을 운영하여 상담과 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2020년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인력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2021년 428,911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2021년 입소자를 대상으로 172,385건의 심리·치료, 수사, 의료·법률 연계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8,996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진료건수 13,870건)하고, 11,010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 및 상담을 지원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2021년 313,868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긴급피난처를 통해 5,433명을 입

을 증원하고 직업훈련비 지원 등 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안전을 강화하였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매년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고 130.27.~130.35., SDG5.2, 16.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하여 제3차 심의의 불수용 입장을 변경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동 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22년 6월 기준 886명이 교정시설에서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은 2019년 2월을 마지막으로 석방이 완료되었다. (권고 132.94.~132.106., SDG16.1)

### 사생활권의 보장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인터넷 회선의 패킷 감청으로 광범위한 통신 감청이 가능하게 했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 법은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고,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다.

##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소외계층을 위한 조치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직계혈족 등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2017년부터 국가의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

시보호하였다.

강화하고 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하였다. (권고 130.23.~130.24.)

### 주거의 보장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거주자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여부를 상담하는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의 공백으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4만호 공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SDG11.1)

### 노인복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노인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사례를 조사하며 상담·법률·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21년 34개소에서 37개소로 확충하였다. 또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 약 5만명이 이수하였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나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모니터링,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댁내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3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권고 130.55.~130.62.)

###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또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2021년 4월부터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권고 130.48.~130.49. SDG5.1, 8.5)

## 노동기본권 강화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며, 2019년 10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방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이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2022년 6월 기준 15개 직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은 2022년 1월 쿡·대리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하여 14개 직종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21년 9월에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 일하는 환경 개선, 일자리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권고 130.51., SDG8.8)

## 건강한 노동환경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2019년 7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근로기준법」을 추가 개정하여(2021년 10월 시행) 사용자(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와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도입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SDG8.5, 8.8)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조치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7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sup>3)</sup> 정부는 전체 근로감독에 비정규직 차별을 필수 점검 항

3) 이로 인해 근속기간 1년 6개월 초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6월 16.8%에서 2019년 6월 26.0%로

목으로 포함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0년부터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을 운영하여 전국 사업장에 차별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등 담당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고용구조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권고 130.52~130.53., SDG8.5, 8.8)

### 비용 걱정 없는 교육

정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 받도록 하였다.<sup>4)</sup>또 공공 부조제도로써 가구 소득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가정의 아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지급하던 교육급여를 통합하여 수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였다. (권고 130.63~130.64., SDG4.1, 4.2)

## e. 여성

###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정부는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여성폭력이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2020년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범정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였다.<sup>5)</sup> (권고 130.18, 130.23~130.24., 130.30., 130.33., 130.35., 130.71., SDG5.1, 5.2, 16.1, 16.3)

### 스토킹범죄 근절

---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규직 전환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 6월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 전환 인원이 12% 증가하였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계약) 비중은 2021년 17.4%로 2020년 18.3%보다 감소하였다.

4)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고교 진학률 99.7%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다.

5)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 「직장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여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고 130.30., 130.33., 130.35., 130.71., SDG5.1, 5.2, 16.3)

###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24시간 상담,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지역 단위 상담소를 운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1년 7월 시행)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 요청 대상자를 본인, 직계친족, 형제·자매에서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학령별 콘텐츠를 제작(2021년)하고 교육 플랫폼을 개설(2022년)하여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성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물 등 제작·반포,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시청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2020년 6월 시행)하고 불법촬영물 관련 법정형을 상향(2020년 5월 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즉시 삭제의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였다. (SDG5.2, 16.1)

###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부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 상담, 법률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을 하고 있다. 또 해바라기센터<sup>6)</sup>

6)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라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를 운영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권고 130.27.)

### 젠더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여러 다른 법령에 반영되었다. 2021년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40%를 초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2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젠더주류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통계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7) (권고 130.17., 130.19.~130.21.)

### 고용상 성평등 촉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별 임금차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있다.8)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였다. 2017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를 시행하였다.9) 또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대상을 AA 대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10)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청년여성이 여성리더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여성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규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여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11) 또

7) 대중매체 성차별 사례 심의요청 건수는 2017년 119건, 2018년 268건, 2019년 323건, 2020년 579건이다. 성평등 미디어 교육 대상은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단에서 2018년 청소년, 2020년 방송·언론인까지 확대하였다.

8) 2021년 868개소에 집중감독을 실시하였고, 2022년 1,000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9) 2018년 42개소, 2019년 50개소, 2020년 51개소, 2021년 30개소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였다.

10)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통계 기준 2015년 37.2%, 2016년 36.7%, 2017년 34.6%, 2018년 34.1%, 2019년 32.5%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AA 분석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에는 10.22%였으나 2017년 20.39%에 이른 후 2018년 20.56%, 2019년 19.76%, 2020년 20.92%, 2021년 21.30% 수준이다.

1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 새일센터는 2016년 150개, 2017년 155개, 2018년 157개에서 2021년 159개까지 확

2018년부터 여성의 경력개발과 직장적응, 기업의 문화개선을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2022년 6월 시행)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권고 130.17.~130.21., 130.48., 130.50., 130.68.~130.70., SDG5.5, 8.5)

## 여성 대표성 증진

정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공무원 24.4%, 공공기관 임원 22.5%를 여성으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과의 자율협약, 연구조사,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이 2019년 4.0%에서 2021년 5.2%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 후보자의 추천 비율에 따라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권고 130.66.~130.70., 132.113., SDG5.5., 8.5)

## 일·가정 양립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기금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남성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급여 지원)의 상한액을 인상하였다.<sup>12)</sup> 그 외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실시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육아휴직 기간과 합하여 2년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하였으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정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하고 인증을

총되었다.

12) 2017년 7월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모든 자녀 200만원, 2019년부터는 모든 자녀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상향하였다.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sup>13)</sup>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보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다. (권고 130.66., SDG5.5)

## f. 아동

###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아동 정책(2019년) 및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을 수립하였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아동의 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발생단계부터 보호 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개입·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민간에서 하던 아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함으로써 정책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권고130.23., 130.24.)

### 아동에 대한 성폭력 근절

정부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20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며,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정형을 상향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하였다. (권고 130.76., SDG5.2, 16.2)

### 아동학대 대응

정부는 2020년 4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일시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피해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만 6세 미만 아동 대상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분리 시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체계를 우선하였다. 분리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인력이

13)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008년 14개에서 2021년 4,918개로 확대되었다.

배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였고<sup>14)</sup>,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대상 상담·치료, 교육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sup>15)</sup>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을 설치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6)</sup> 보건복지부는 매년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부모 대상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였다. (권고 130.73.~130.76., SDG5.2, 16.2)

## 아동복지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만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4월 기준 27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아동 양육가구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 또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및 돌봄시간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sup>17)</sup> (권고 130.23., 130.24., 130.74.)

## g. 장애인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

정부는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앙·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

14)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9년 73개소에서 2021년 98개소까지 확대하였다.

15)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9년 67개소에서 2021년 77개소까지 확대하였다.

16) 2022년 4월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3개 권역 6개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전국에 권역별로 2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7) 지원인원 및 연간 돌봄시간을 2021년 4,005명, 720시간에서 2022년에는 8,005명, 84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 본인부담금 설계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및 지정 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 달체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 130.77.~130.78., SDG3.8)

### 장애인학대 예방

정부는 장애인학대 예방,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다. 2022년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특수치료 제한, 가혹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동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력이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권리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 130.79.~130.80., SDG 16.1)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부는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7년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sup>18)</sup> 정부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급여량을 결정해왔던 장애등급제를 2019년 7월 폐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권고 130.61., 130.78.)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법무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정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였고,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 개최를 연 1회에서 분기별 개최로 확대하였다.

## h. 이주민과 난민

###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

1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기준 276,000명이다.

으며,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시행 중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포상, 각종 문화행사 개최,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발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국내에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초기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고 130.25.)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부터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콜센터를 통해 13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가정 문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를 통해 자녀양육·사회진출 등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인 수요에 맞춘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생활지원 방문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진로 지도, 기초학습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다. (권고 132.49.)

### **문화다양성 존중과 차별방지를 위한 조치**

정부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주민 포함 소수문화 주체와 지역민 간 상호문화교류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과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유네스코에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1년에는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청소년·공직자·교육자 등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외국 국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HIV 검사를 의무화한 법무부고시를 개정하여 채용신체검사서에서 HIV 검사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HIV 검사를 전면 폐지하였다. (권고 130.22, 130.81., 130.85., SDG10.3)

## 2. 이행 중인 권고

###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 국제협약의 비준

정부는 그동안 비준하지 않았던 국제인권협약을 가입 및 비준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였다. 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 제22조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고<sup>19)</sup>, 2021년 4월 ILO 핵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의 비준을 완료하였다.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준 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권규약 제22조 적용 유보를 철회할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권고 130.1.~130.6., 132.19., 132.20. SDG16.10, 8.7, 8.8)

정부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자발적 공약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운영하여 협약을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2022년 7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고 130.6., 132.1.~132.3., 132.19.)

정부는 제3차 심의시 불수용 입장을 밝혔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은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으로 개인진정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절차를 통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 130.6., 132.12., 132.19.)

### b. 국내 제도의 변화

####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9)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동조합까지 실업자,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였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교원노동조합법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다.

130.15.~130.16.)

### c. 시민적·정치적 권리

#### 균형법 제92조의6 관련 조치

대법원은 2022년 4월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 「균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행위 등이 근무시간 외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군사법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 132.44., 132.45., 132.65.~132.68., SDG10.3)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정부는 2017년 11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집회 참가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를 도입하였고,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경찰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회의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경찰 부상자 수와 집회현장의 불법행위는 감소하였다.<sup>20)</sup> 또한 경찰의 범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 9월 집회시위에 관한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시행하고 있다.<sup>21)</sup> 또 타인의 집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 사전통지하도록 하여 다른 이들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 130.38.~130.41., SDG16.1)

###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기초의료보장 강화

20) 집회시위 횟수는 2018년 68,315회, 2019년 95,266회, 2020년 77,453회, 2021년 86,552회로 증가 추세이나 경찰 부상자 수는 2018년 84명, 2019년 76명, 2020년 31명, 2021년 4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집회현장 불법행위 또한 감소하였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인원은 2016년 3,425명, 2017년 1,276명, 2018년 488명, 2019년 1,220명, 2020년 1,060명, 2021년 1,211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는 답변이 2016년 52%에서 2017년 73.9%, 2019년 74.8%, 2019년 84.8%로 상승 추세이다.

21)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는 모니터링단이 집회시위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집회 관리 정책 및 기초를 수정, 보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초의료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의료 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수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였고,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 130.63., SDG3.8)

## 노인복지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되, 그 적용 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다. 2022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대비 2.5% 인상하여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2)</sup> 또한 만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공공형,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sup>23)</sup> (권고 130.55.~130.62. SDG1.2, 10.4)

## e. 여성

###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른 조치로 법무부는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2021년 8월 건강보험으로 의료인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여 임신한 여성이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 수술과정, 수술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고 132.114~132.115., SDG5.6)

## f. 장애인

22)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추가로 매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23) 노인일자리 사업량 양적 확대를 위하여 기존 인프라 외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및 기타 비영리 조직도 진입 가능하도록 발굴하고 수행기관화 교육 지원을 통해 수행기관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2018년 510,000개, 2019년 640,000개, 2020년 740,000개, 2021년 820,000개, 2022년 845,000개로 확대하였다.

##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개선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을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1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권고 130.54., SDG10.2, 10.4)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조원을 지원하여 2021년 말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30.6%에 달하였다. 저상버스 도입률을 더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월 동 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 g. 이주민과 난민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정부는 제3차 심의에서 이주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었으나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하고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되었고, 동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 등이 그 출생등록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 132.118.~132.124., SDG 10.3, 16.9)

###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 근절

정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였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는 차별적, 혐오적 방송내용과 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정책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을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

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가 시 감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상으로 유포되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조장, 조롱·모독 등의 표현을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부록1, 2 참조) (권고 130.25., 132.46., 132.47., 132.49.~132.55., SDG10.3)

### 학령기 이주아동의 교육 보장과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출입국사실 증명이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에 어려운 경우 거주사실만 확인되어도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고,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를 통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미등록 아동이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강제퇴거의 우려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취학 중인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있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에 더해 정부는 학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하였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동이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와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아동이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였다. (권고 132.126., 132.129., 132.130.)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폭력방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하여 매년 약 3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고용허가 취소,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리고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하였다.<sup>24)</sup> 외국인근로자가 언어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40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콜센터를 통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49개 고용센터에서 152명의 통역원이 고용허가 방문 민원, 사업장 방문, 진정사건 출석조사, 사업장 실태 조

24)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03개 사업장 점검 결과 5,416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노동관계법 위반 총 18,900건에 대해 시정지시 17,471건, 사법처리 27건, 과태료 부과 484건, 행정처분 237건, 관계기관 통보 681건의 조치를 하였다.

사 등의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 130.81.~130.84., SDG 8.8)

### **고용허가제 개선**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사업장의 인력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고용허가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조건으로 국내 입국과 체류 허가를 받고 있어 원사업장 근로가 원칙이나, 근로계약 해지·종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이동제한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8차례에 걸쳐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변경 사유를 확대하였다. 202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재해예방, 보건관리,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산업재해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2023년부터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시에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시설에 대한 시각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였으며, 그러한 숙소에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을 내국인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장 점검 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전후 휴가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권고 132.127.~132.128., SDG 8.8)

###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위한 조치**

정부는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수사나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적용 대상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해당국가의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 경우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0.72. SDG5.2., 16.3.)

### 난민인정심사의 개선

정부는 2013년 「난민법」의 시행 이후 급증한 난민신청에 전문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사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심사 대기기간 장기화를 방지하였고,<sup>25)</sup>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3 참조) 한편, 난민전담 공무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고,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도입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한 통역인이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민면접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자주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였다. 현재, 난민신청자가 면접 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 심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도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취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3. 이행하지 않은 권고

###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 국제협약의 비준

국내 법체계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아직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입장을 검토 중이다.<sup>26)</sup> 다만 정부는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민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 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의 채택에 참여하였다. (권고 131.1., 132.13.~132.15., 132.125.)

25) 난민심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3년 「난민법」 첫 시행 당시 전담인력이 18명이었으나 2018년 39명, 2021년 90명까지 증원하였다.

26) 동 협약 상의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보호 및 촉진 의무(제44조), 취업을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할 당사국의 의무(제52조제4항),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제29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정규화 조치 노력(제69조제1항) 등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내법 충돌 가능성,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동 의정서는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에 구금시설에 대한 정보와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군사 기밀보호,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등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비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내법 충돌 가능성,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다. (권고 132.7.~132.8.)

대한민국은 헌법 제31조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권고 131.2.)

## b. 국내 제도의 변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령 등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철회 또는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2022년 5월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고 132.26.~132.45., 132.57.~132.62., 132.64., SDG10.3)

### 사형제 폐지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sup>27)</sup> 및 2021년 10월 제48차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sup>28)</sup> 채택 시 처음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위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유엔 총회 결의를 포함한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2.70.~132.89., 132.4.~132.6.)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7)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A/RES/75/183) 참조

28)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A/HRC/RES/48/9) 참조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여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2.107., 132.108.)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 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sup>29)</sup> (권고 132.25., 132.90., 132.109.~132.111. SDG16.1, 16.3)

#### IV. 자발적 공약의 이행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노력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2016~2018년 임기, 2020~2022년 임기)으로서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3위원회 내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인권 논의의 저변 확장을 위해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인권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OHCHR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속함으로써 유엔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녀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고, 심화된 여성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아동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정보 공백이 없도록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였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통·번역 지원과 비자 확인 없는 코로나 검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부록4 참조)

29)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4명,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11명이다.

## 부 록

### <부록1> 방송심의의결 내역(2017.11.~2022.5.)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5	계(단위: 건)
의결내역	0	3 (권고1, 의견 제시2)	7 (권고4, 의견 제시3)	2 (권고1, 의견 제시1)	2 (권고1, 의견 제시1)	0	14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

### <부록2> 통신심의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내역(2017.11.~2022.5.)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5	계(단위: 건)
심의 건수	1,356	2,638	1,886	1,580	1,369	519	9,348
시정 요구 (삭제, 접속차단)	1,166	2,352	1,406	473	308	267	5,972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3호 비목(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위반

### <부록3> 연도별 난민신청 및 심사종결·대기 현황

구분	'94~'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난민신청	9,539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심사종결(1차)	7,416	4,522	7,061	6,416	6,601	10,013	14,032	9,676
심사대기(1차)	2,123	3,312	3,792	7,318	16,890	22,329	14,981	7,646

### <부록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노력

#### 자녀돌봄 지원

지난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가정, 마을) 초등돌봄에도 공백이 없도록 여러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 협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마을돌봄기관은 긴급돌봄 제도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월 가

족돌봄휴직 대상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손가정까지 확대하고, 유연한 활용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 휴교 등으로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여성고용회복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심화된 여성고용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여성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 78만 여 개 창출하는 등 당장 시급한 지원뿐 아니라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양과 질 양면에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학습권 보장**

2020년 4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습공백을 최소화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고자하였으며, 2022년 5월부터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장애인 지원**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농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였다. 또 정부는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 및 미디어 변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 디지털기기·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방역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콜센터에서 13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자료 등을 통·번역하여 지원하였다. 또 법무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비자 확인 없이 무

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2020년 5월부터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 중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하여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1년 8월 장기보호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3차례에 걸쳐 접종하였다. 2022년 3월에는 보호외국인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보호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SDG3.8.)

### 예술인 지원

정부는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였다.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